##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30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27.

발 의 자: 장경태·김남국·김홍걸

소병철 · 양정숙 · 오영환

유정주 • 이규민 • 이용빈

이원택 · 장철민 · 전용기

최혜영 · 홍성국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의 경제·사회·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 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「청년기본법」이 제정되었음.

그러나 지난해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에 따른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「청년기본법」에서 만 19세이상부터 규정한 '청년'의 정의와 서로 상이하여 제도적·정책적 공백이 예견됨.

또한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청년 정책 실행이 어렵고, 방대한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운영·관리 및 통합·연계 등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. 이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과 실효성을 확보하고,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·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·관리 및 통합·연계를 실현하며, 「공직선거법」의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를 청년 연령으로 반영하여 제도적·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3조제1호·제5호·제6호,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, 제25조 부터 제27조까지)

###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본문 중 "19세"를 "18세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"청년단체"란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- 6. "청년시설"이란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12조제3항 중 "위탁하는"을 "위탁하거나,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"으로, "사업 수행에"를 "사업의 수행과 연구시설 조성 및 운영에"로 한다.

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국무총리는 청년 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 및 통합·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"통합정보시스템"이라 한 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③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,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며, 제5장(제25조부터 제27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제5장 청년시설 등

- 제25조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 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각종 수련활동·교류활동·문화활동(이하 이 조에서 "청년활동"이라 한다)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 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제26조(청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 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 위에서 그 운영·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27조(청년친화도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, 청년발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 이조에서 "청년친화도시"라 한다)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를 청 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·절차,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청년"이란 <u>19세</u> 이상 34세	1 <u>18세</u>
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	
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	
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	
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5. "청년단체"란 청년발전 또는
	청년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
	립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
	<u>다.</u>
<u> &lt;신 설&gt;</u>	6. "청년시설"이란 청년발전 또
	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청년에
	게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
	<u>다.</u>
제12조(청년정책 연구사업) ①・	제12조(청년정책 연구사업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	③
연구사업의 수행을 <u>위탁하는</u>	위탁하거나 <u>,</u>
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	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-

<신 설>

<u><신 설></u> <신 설> ------사업의 수행과 연구시설 조성 및 운영에-----

제12조의2(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 및 통합·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"통합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 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③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5장 청년시설 등

제25조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각종 수련활동·교류활동·문 화활동(이하 이 조에서 "청년 <신 설>

<신 설>

 활동"이라
 한다)
 등을
 지원하

 기
 위하여
 청년시설을
 설치・

 운영할
 수
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조할 수 있다.

제26조(청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·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 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(청년친화도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 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, 청년발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 이

제5장 보칙

제2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(생 략)

제26조(포상) (생략)

제27조(국회 보고) (생 략)

제28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31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) (생략)

조에서 "청년친화도시"라 한다) 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.

-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·특 별자치도 또는 시・군・자치구 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•절차,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장 보칙

제2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(현행 제25조와 같음)

제29조(포상) (현행 제26조와 같 음)

제30조(국회 보고) (현행 제27조 와 같음)

제) (현행 제28조와 같음)